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2. 2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 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3. 6. 12.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4. 2. 27.)

상정, 심사,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: 어르신동행과장

가. 제안이유

기존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된 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,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

나. 주요내용

1) 조문의 내용이 분명해지도록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수정

(안 제3조제1항, 제5조제1항)

2)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(운영자→급식기관) 하고, 공개모집 외 불필요하게

규정된 우선선정 내용 삭제(안 제6조, 제7조)

3)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위탁 규정 추가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된 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,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과 안 제5조제1항 조문 제목을 ‘운영’에서 ‘급식방법’으로 수정하여 내용이 분명해지도록 조문의 내용 및 제목을 수정하고,
 -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‘운영자 모집’에서 ‘급식기관’으로 수정하고, 불필요하게 규정된 우선 선정 내용을 삭제하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위탁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」 제7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관계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3조와 관련, 지원대상 선정 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안 제8조와 관련,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 일반회계 재원으로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세외수입 분석과 후원금 모금 등 종합적인 검토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

제7조(건강증진)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30>

1.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
2.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
3.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4.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5. 보건교육과 건강상담
6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
7.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
8.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- 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,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(이하 “취약계층 노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 붙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69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2. 27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제3조제1항 노인급식 지원 대상 및 제6조제1항 급식기관의 선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선정한다**”를 “**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**”로 수정함.

나. 제6조제1항 중 “**공개모집하여**”를 “**공개모집하되, 지역균형을 고려하여**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선정한다”를 “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개모집하여”를 “공개모집하되, 지역균형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<u>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이 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 범위에서 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운영) ①<u>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, 생활상태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급식방법) ①<u>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할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운영자 모집) ①</p>	<p>제6조(급식기관) ① --</p>	<p>제6조(급식기관) ① --</p>

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,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,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, 종교단체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·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운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

----- 노인-----

-- 급식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③ 급식기관은 -----

----- 공
----- 개모집하되,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-----
-----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<p>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.</p>	
<p>제7조(지도점검)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지도점검) ----- ----- ----- <u>급식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7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8조(사업의 위탁) ① <u>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</u> ② <u>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 (생략)</p>	<p>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</p>	<p>제9조 (개정안과 같음)</p>